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명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68

발의연월일: 2024. 9. 10.

발 의 자:황명선·김현정·김남근

박희승 · 송재봉 · 정동영

박민규 · 김성회 · 염태영

임광현 · 장경태 · 강득구

김우영 · 임미애 · 홍기원

문대림 • 문진석 • 황정아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군인 급식 규정」은 군인에게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되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그러나, 영외에 거주를 명받은 군인은 사실상 현행작전부대를 제외한 부대의 모든 간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가 작전이나 훈련, 주말 및 휴일근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영내에서 급식을 하여야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공제하고 있어 불만이 크고 이는 군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

이에 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, 당직근무 등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도

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

법률 제 호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(이하 "현물"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 다만, 참모총장이 영외거주(營外居住)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 음하여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이 작전, 훈련, 당직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현물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3조(실비변상) (생 략)	제53조(실비변상) ① (현행 제목
	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
	<u>식(이하"현물"이라 한다)을 지</u>
	급한다. 다만, 참모총장이 영외
	거주(營外居住)를 명한 군인에
	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
	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
	<u>다.</u>
<u><신 설></u>	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
	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이 작
	전, 훈련, 당직근무 등 불가피
	한 사유로 인하여 현물을 지급
	받는 경우에는 이를 급식비에
	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